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김지수 사무관 조상흠	042-481-5213 042-481-59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7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2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 특허청,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를 조사해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 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보다는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미만(25.6%), 10~15%(15.6%), 20%이상(2.8%)순이었다.

* 미국 7.04%(’07 AUS Consulting, 3015건 분석), 일본 3.7% (’10 경제산업성, 680건 분석)

-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선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지재산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어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시 계약의 절반 가량은 제한사항, 분쟁 조항 등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특허권자는 지역, 활용분야 등을 제한해 실시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무효심판 제기 금지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권자 역시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권의 유효성 보장, 특허 기술의 성능 보장,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이러한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조사방식(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실제 실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업종별, 기업규모별 통계는 부족한 표본으로 인해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사례 축적이 필요함

□ (응답기업)

- 지난 5년간('12~'16)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기업 중 무작위 추출한 5,400개 기업 설문 실시→ 703개(13%) 기업 응답
- 실시권자 유형은 중소기업 96.7%, 중견기업 2.4%, 대기업 0.9%
- 특허권자 유형은 중소기업 59.4%, 개인 18.7%, 대학·공공기관 13.1%, 중견기업 4.4%, 대기업 3.6%, 해외기업 0.9%

□ (실시권 유형) 통상실시권(57.5%) 비율이 전용실시권(40.9%), 독점적 통상실시권(1.6%)보다 높음

- 건설 분야의 통상실시권의 비율이 가장 높고(72.4%) 의료, 정밀, 가구, 화학, 식료품 분야는 통상실시권(20%이하)의 비율이 낮음
-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비율은 특허권자가 대학(2.9%) 및 공공연구기관(2.2%)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통상실시권 :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실시권자에게 부여
- 전용실시권 : 실시권자가 특허 실시 권리를 독점하므로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설정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 독점적 통상실시권 : 실시권의 내용은 전용실시권이나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으므로 실시권자가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음

□ (계약 기간) 특허 존속기간(48%)과 특정 기간 설정(50%)이 비슷

- 특정기간 설정한 경우 평균 계약기간은 4.6년

□ (실시 대상) 단일 특허가 86%로 대부분 차지

- 패키지 라이선스는 6.9%, 상호 실시허락은 5.2%, 특허풀은 1.7%,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는 0.9% 차지
- 단일 특허 실시 비율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고(86.4%), 대기업(80%), 중견기업(72%)는 중소기업에 비해 패키지 라이선스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체결
- 생명공학·농림(19.2%), 의약(16.7%), 전기·전자(14.3%) 분야의 경우 패키지 라이선스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음

- 패키지 라이선스 : 여러 건의 특허를 묶어서 라이선스
- 특허풀 : 복수의 특허권자가 보유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 또는 제3자에게 라이선스
- 하이브리드 라이선스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묶어 라이선스

□ (실시료) 매출액의 4.75%가 평균

- 경상실시료(83.8%) 계약이 일반적이며 정액실시료(16.2%) 계약은 적음
- 경상실시료 산정은 매출액(72.4%)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 그 외 산출단위(7.8%), 순이익(6.4%), 제조원가(6.4%), 공사계약금(4%), 기타(4%) 기준으로 경상실시료 산정
-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 기준일 경우 4.75%, 순이익 기준일 경우 9.77%, 제조원가 기준일 경우 6.07% (전체 평균은 5.5%)
 - * 참고 : 미국 7.04%(07 ALS Consulting, 3015건 분석), 일본 3.7%('10 경제산업성, 680건 분석)
- 실시료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 미만(25.6%), 10~15%(15.6%), 20% 이상(2.8%) 순
- 해양·항공(9%), 환경(8.5%) 분야의 실시료율이 높고, 전기·전자(3.3%), 의약(3.5%), 정보통신(3.7%) 분야의 실시료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
 - * 해양·항공, 환경 분야는 단기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높은 실시료율의 원인으로 추정
 - * 사례 수가 적은 기술분야도 있어 기술분야별 분석의 신뢰도는 높지 않음

□ (제한사항) 49.6%가 제한사항을 두었으며 실시범위 제한(28.1%), 재실시권하여제한(6.8%), 거래제한(5.8%), 가격제한(5.2%), 그랜트백(2.8%) 순

- 대기업이 실시권자일 때 실시계약의 제한사항 포함 비율(20%)이 중소기업(49.8%)보다 적음

- 실시범위 제한 : 지역 한정, 수출 제한, 이용분야 제한 등
- 거래제한 : 경쟁업체 특허 사용 금지, 경쟁 특허 사용 시 특허권자 승인 요구 등
- 그랜트백 : 실시권자가 기술 개량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지, 양도 또는 실시 허락

□ (분쟁조항) 53.8%가 분쟁관련 합의사항을 명시

- 분쟁관련 합의사항은 특허보증 32.9%, 부쟁의무 10.4%, 면책 9.4%, 실시료 불반환 조항 8.2% 순
- 의약 분야는 가장 높은 비율인 60%의 계약에서 분쟁조항을 포함하고, 특허보증(60%), 부쟁의무(40%)를 주로 포함

- 특허보증 : 특허기술의 성능 보증, 특허의 유효성 보증,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 등
- 부쟁의무 : 실시권자가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의무
- 면책 : 실시권자가 특허기술 실시로 제3자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특허권자는 면책
- 실시료 불반환 : 향후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실시료 불반환